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7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2년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세무 및 법률정보

- 2023년 세법개정안
-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2 년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7.6]

주요내용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안내

① (정정현황) 상장회사 2,569사('22년말) 중 131사(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전년(총 2,487사 중 160사, 6.4%) 대비 29사(1.3%p) 감소

- 총 정정횟수는 379회(회사당 2.89회)로 전년(410회, 회사당 2.56회) 대비 31회(7.6%) 감소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회사 수 및 횟수

구 분		'21년	'22년	전년 대비
정정 회사수 (상장회사 중 비중)		160사 (6.4%)	131사 (5.1%)	△29사 (18.1%↓) (1.3%p↓)
정정 횟수	별도(개별)	218회	212회	△ 6회 (2.8%↓)
	연결	192회	167회	△25회 (13.0%↓)
	계	410회	379회	△31회 (7.6%↓)

② (정정내용) 전체(총 379회)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72.0% (273회)로 많은 부분을 차지(전년 78.0% 대비 6.0%p ↓)

* ①감사보고서 본문 ②재무제표(본문, 주석) ③기타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보고서,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타)으로 구분하여 정정여부를 점검

**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43.5% 수준

③ (감사의견)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21사)으로 전년(19건, 15사) 대비 4건(6사) 증가

- 이 중 비적정 →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21건(20사)으로 전년(18건, 14사) 대비 3건 증가

* 회사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

④ (경과기간)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의 평균 경과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정정공시 평균 경과기간(12.1개월) 대비 상대적으로 긴 편

□ (시사점)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하였다가 '22년 중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하였음

*('19년)242회→('20년)305회(26.0% ↑)→('21년)410회(34.4% ↑)→('22년)379회(7.6% ↓)

-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필요

-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엄정조치 예정

개요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안내

* 연도별 상장회사 수 : ('20년)2,382사 → ('21년)2,487사 → ('22년)2,569사

정정회사 수

II. 22년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1. 정정회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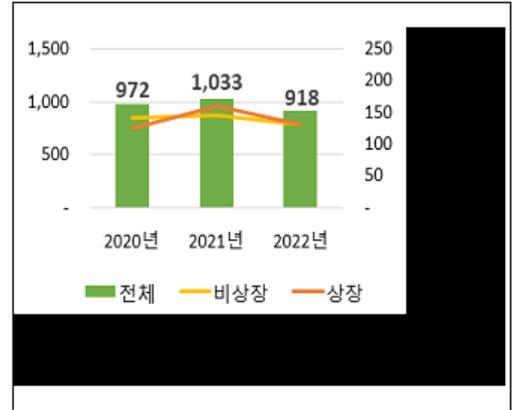
□ '22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가 정정*된 상장회사는 총 131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5.1% 수준[전년(160사) 대비 29사 감소(18.1% ↓)]

* 사업보고서 공시 후 감사보고서 정정 기준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상장회사 수

(단위: 사, %)

구분	'20년	'21년	'22년	전년 대비	
상장	유가증권	44	51	33	△18 (△ 35.3)
	코스닥	75	101	87	△14 (△ 13.9)
	코넥스	6	8	11	+ 3 (+ 37.5)
	계 (상장회사/전체)	125 (5.2)	160 (6.4)	131 (5.1)	△29 (△ 18.1)
비상장 (정정회사/전체)	847 (2.9)	873 (2.6)	787 (2.1)	△ 86 (△ 9.9)	
계 (정정회사/전체)	972 (3.1)	1,033 (3.1)	918 (2.4)	△115 (△ 11.1)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33사(전년 대비 35.3% ↓), 코스닥 상장회사 87사(전년 대비 13.9% ↓), 코넥스 상장회사 11사(전년 대비 37.5% ↑)가 정정

◦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외부감사 대상회사(918사) 중 상장회사(131사) 비중*은 14.3% [전년 15.5% 대비 1.2%p 감소]

* ('20년)12.9%→('21년)15.5%→('22년)14.3%

◦ 정정 상장회사(131사) 중 감사인이 4대 회계법인인 비중은 16.0% (21사)로, 전년 15.6%(25사) 대비 0.4%p 증가

정정 횟수

2. 정정 횟수

□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총 379회로 전년(410회) 대비 31회 감소(7.6% ↓)하여,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1,381회)의 27.4% 수준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98회로 전년(169회) 대비 감소, 코스닥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259회로 전년(227회) 대비 증가

◦ '22년 중 정정한 총 379회를 분석한 결과 2010~2021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정정되었으나, 주로 2020, 2021회계연도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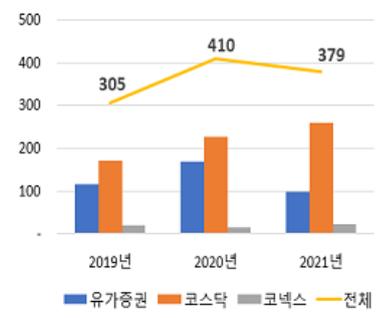
* '18년 이전 60회, '18년 39회, '19년 56회, '20년 106회, '21년 118회

상장회사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

상장회사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

(단위: 회, %)

구분	'20년	'21년	'22년	전년 대비	
감사 보고서	유가증권	59	89	53	△36 (△40.4)
	코스닥	96	117	138	+21 (+17.9)
	코넥스	18	12	21	+9 (+75.0)
	계	173	218	212	△6 (△2.8)
연결 감사 보고서	유가증권	56	80	45	△35 (△43.8)
	코스닥	75	110	121	+11 (+10.0)
	코넥스	1	2	1	△1 (△50.0)
	계	132	192	167	△25 (△13.0)
합계	유가증권	115	169	98	△71 (△42.0)
	코스닥	171	227	259	+32 (+14.1)
	코넥스	19	14	22	+8 (+57.1)
	계	305	410	379	△31 (△7.6)



정정 사항

3. 정정 사항

※ 감사보고서는 ①표지, ②본문, ③(첨부)재무제표 및 주석, ④(첨부)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⑤(첨부)외부감사 실시내용으로 구성

□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사항(총 379회) 분석 결과, 재무제표 본문(273회, 72.0%), 주석(80회, 21.1%), 감사보고서 본문 등(26회, 6.9%) 순

◦ 재무제표 본문 정정은 전년(320회) 대비 47회 감소하였고, 주석 정정은 전년(60회) 대비 20회 증가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사항 분포

(단위: 회, %, %p)

정정 사항	'21년	'22년	전년 대비
재무제표 본문	320(78.0)	273(72.0)	△47(△6.0)
주석*	60(14.6)	80(21.1)	+20(+6.5)
감사보고서 본문 등*	30(7.4)	26(6.9)	△4(△0.5)
계	410(100)	379(100)	△31(-)



* 재무제표 정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재무제표 및 주석 정정이 같이 있는 경우는 모두 재무제표 정정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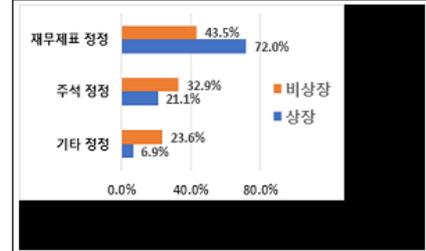
□ '22년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상장회사의 경우 72.0%로 높은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43.5%로 상장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

◦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

상장·비상장별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22년)

(단위: 회, %)

정정 사항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정정 횟수(비중)	정정 횟수(비중)
재무제표 본문	273(72.0)	436(43.5)
주석*	80(21.1)	330(32.9)
감사보고서 본문 등*	26(6.9)	236(23.6)
계	379(100.0)	1,002(100.0)



* 재무제표 정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재무제표 및 주석 정정이 같이 있는 경우는 모두 재무제표 정정으로 분류

**감사의견
변형현황**

4. 감사의견 변형 현황

※ (분석대상)상장회사의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212 건

□ (건수) '22년 중 상장회사의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21사)으로 전년(19건, 15사) 대비 4건(6사) 증가

◦ 감사의견이 변경된 회계연도는 '18년 1건, '19년 3건, '20년 7건, '21년 12건

□ (감사의견 변경)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것이 대부분(21건 20사, 정정 건의 91.3%)이며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건도 존재(2건 1사, 정정건 중 8.7%)

◦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21건(20사)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정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

◦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2건(1사)은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나, 전임 감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의견을 변경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의견 변경 현황

정정 전 감사의견	정정 후 감사의견			
	적 정	한 정	의견거절	계
적 정	-	2건 (1사)	-	2건 (1사)
한 정	8건 (8사)	-	-	8건 (8사)
의견거절	13건 (12사)	-	-	13건 (12사)
합 계 (비 중)	21건 (20사) 91.3% (95.2%)	2건 (1사) 8.7% (4.8%)	0건 (0사) 0.0% (0.0%)	23건 (21사)

경과기간

5. 경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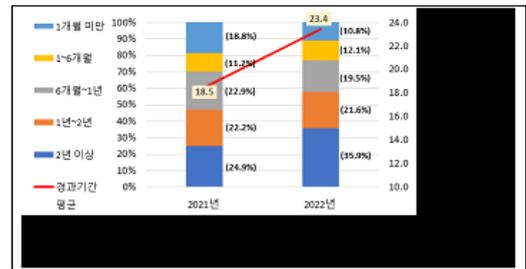
□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과 관련하여 최초 공시 후 정정까지의 경과기간은 평균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하였으며,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체 평균(12.1개월) 보다는 긴 편

◦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 중요 오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본문 수정이 72.0%로 비상장회사(43.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경과기간

(단위: 회, %, 개월)

정정 경과기간	'21년	'22년
1개월 미만	77 (18.8)	41 (10.8)
1개월~6개월	46 (11.2)	46 (12.1)
6개월~1년	94 (22.9)	74 (19.5)
1년~2년	91 (22.2)	82 (21.6)
2년 이상	102 (24.9)	136 (35.9)
계	410 (100.0)	379 (100.0)
경과기간 평균	18.5개월	23.4개월



시사점

III. 시사점

1.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감소

□ '22년 중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총 379회로 전년(410회) 대비 감소*하였으며, 정정 대상 회계연도는 주로 2020, 2021회계연도에 집중**

* ('19년)242회→('20년)305회(26.0% ↑)→('21년)410회(34.4% ↑)→('22년)379회(7.6% ↓)

** 정정대상 회계연도 : ('18년 이전) 60회, ('18년) 39회, ('19년) 56회, ('20년) 106회, ('21년) 118회

◦ 이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개혁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정정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관련 제도가 점차 안착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

* 단순 회계오류 자진정정시 금감원장 경조치 종결로 회사가 회계오류를 적시에 수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재무제표 심사 완료 회사 : ('20년) 98사 → ('21년) 141사 → ('22년) 136사]

** 동일 감사인 6년 초과 시 지정감사인이 독립된 시각으로 회계감사 수행 가능 [주기적지정대상회사(누적):('19년)220사→('20년)462사→('21년)674사→('22년)677사]

➡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2. 감사인의 재무제표 수정 권고 시 회사 등과 소통 강화 필요

□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 수*는 지정감사인의 엄격한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정점을 기록한 '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는 매년 지속적 발생

* 비적정 의견 회사 수 : ('19년) 65사 → ('20년) 71사 → ('21년) 68사 → ('22년) 53사(잠정)

**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 : ('20년) 20사(27건) → ('21년) 15사(19건) → ('22년) 21사(23건)

◦ 이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의 엄격한 회계처리 기조로 인해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음

➡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근거 등을 회사 및 전임 감사인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3.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감사의견 변경 여부는 상장회사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엄정조치 예정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23.7.27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25 의 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2.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 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input type="checkbox"/> 13개 분야* 262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 R&D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조특령 별표 7 의 2, 칙 별표 6 의 2)

현 행	개 정 안
<p>□ 국가전략기술 대상</p> <p>○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p> <p>*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p> <p>○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p> <p>*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p> <p>- 바이오의약품 분야</p> <p>▪ (기술) 8개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7의2)</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②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③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④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⑤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⑥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⑦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⑧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p> </div> <p>▪ (사업화시설) 4개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6의2)</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②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③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④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p> </div>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

<적용시기>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p> <p>○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p> <p>-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p> <p>○ (적용기한) '23.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p> <p>○ (좌 동)</p> <p>-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목*</p> <p>*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 (소득령부칙)</p> <p>○ (좌 동)</p> <p>○ (적용기한) '28.12.31.</p>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 의 6, 상증법 §71, 조특령 §27 의 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 등 증여 ○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 (기본공제) 10억원 ○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연부연납 기간) 5년 ○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 연납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20년 ○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상속인의 가업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처분 금지 ○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 유지요건 완화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 의 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 (적용요건) ❶~❹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❶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❷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❸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❹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p style="margin-left: 40px;">*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p>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⑤⑥)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등) ○ (공제한도)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25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좌 등)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10.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59 의 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좌 동) - 3천만원 초과: 40%('24.12.31. 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월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 의 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 공제*</p> <p>*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6억원 ○ 직계 존속 :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 존속: 5천만원 ○ 직계 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input type="checkbox"/> 혼인 증여재산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 (좌 동) ○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p>*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 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컴퓨터학원 등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5.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6.30. 	<input type="checkbox"/> 유효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6.30.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16.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 의 5 신설, 소득령 §216 의 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p> <p><input type="checkbox"/> (제출요건) ①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등의 행사 또는 지급</p> <p>○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②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 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p> <p>○ 주식기준보상 등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p><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p> <p>*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p> <p><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p>

<개정이유>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 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7.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배당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배당가산율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9.9%)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 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포함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9.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 (부가법§60④,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좌 등)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좌 등) ○ (좌 등)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 의 2⑤, §156 의 6④, 법인법 §98 의 4⑤, §98 의 6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45의2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1.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 제출의무 -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 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500억 초과 대규모법인 - 국가별보고서 :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초과 ○ 제출기한		<input type="checkbox"/>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12개월→6개월) ○ (좌 동) ○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좌 동)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
- 추진배경 :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주요내용 :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시행일 : 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
- 추진배경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로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탄력세율 종료
- 주요내용 : 제조장 반출·수입가격의 3.5%→5%로 환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전법규부가 2023-367, 2023.06.22)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외사업자로서 줌 미팅(Zoom)1), 구글 클래스 룸(Google Classroom)2)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임

- 1)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 2) 온라인 교육공간 시스템

<교육 내용>

1. 실시간 줌 미팅을 활용한 1회성 세미나 진행 (교육방법, 노하우, 코칭, 컨설팅)
2. 구글 클래스룸과 실시간 줌 미팅을 통한 코스 형태의 영어 수업 진행 (수업, 평가, 학습관리)

(질의요지)

○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간편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63의 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 2023-391, 2023.06.2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x.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업하여 신발 등의 위탁생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x.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였음.

○ 질의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신발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있으며,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요지)

○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범위에,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서면법규법인 2022-4045, 2023.07.1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17년 중 A법인 지분 100%(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000,000주가 '20년에, 000,000주가 '21년에 상환되었으며, A법인은 상환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

○ 질의법인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20년 00억원, '21년 000억원)을 익금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소각된 주식 외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없음.

(질의요지)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